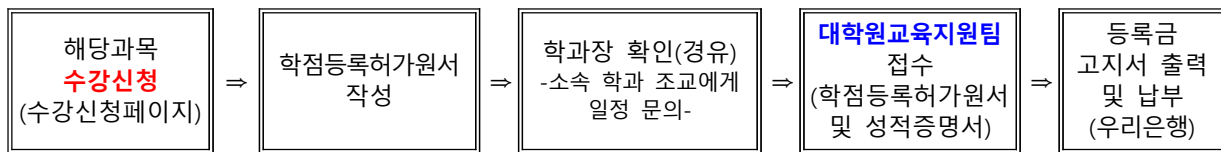


2025 학년도 2 학기 대학원 학점등록, 연구등록, 휴학, 복학, 재입학, 특례재입학 신청 및 일정 안내

■ 학점등록 신청 안내

- ▶ 신청기간: 2025. 8. 1.(금) 9:00 ~ 8. 21.(목) 16:00
- ▶ 신청대상: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은 4 차 학기 이상, 석·박사학위 통합과정은 8 차 학기 이상 등록을 필요하고, **수료에 필요한 학점이 부족한 자 중 수강 신청 학점이 3 학점 이내인 경우**

▶ 신청절차:



- ▶ 유의사항: **금학기 수강신청 마지막 날까지 3 학점 이하에 대한 수강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** 함.
학점등록 신청 후 승인되면 **학점등록 고지서(계열별 등록금의 50%)**를 포탈에서 조회할 수 있음.

■ 연구등록 신청 안내

- ▶ 신청기간: 2025. 8. 1.(금) 9:00 ~ 8. 21.(목) 23:59

▶ 신청대상

- 1) **[필수]** 2008 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**박사학위**과정생 중 2025 년 8 월 수료자(2025 학년도 2 학기 가 수료 후 첫 번째 학기인 자) → 1 차 연구등록 대상자
- 2) **[필수]** 2008 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박사학위과정생 중 2025 학년도 2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인 자 → 2 차 연구등록 대상자
- 3) **[선택]** 본인 필요에 의하여 재학생 신분유지가 필요한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생 전원
(예: 4 단계 BK21/외부기관 장학금 수령자, 외부연구과제 인건비 수급을 위한 자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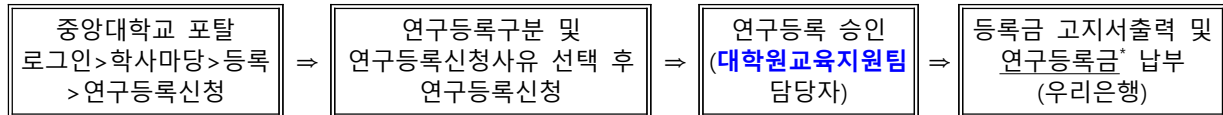
▶ 관련 근거: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I 제 30 조 5 항 및 7 항

- 1) **의무등록자:** 2008 학년도 이후에 입학하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**2 회 연구등록을 필해야** 한다. 1 차 연구등록은 수료 후 첫 학기, 2 차 연구등록은 학위청구 논문 제출 시로 하고, 미납된 연구등록금이 있을 경우 2 차 연구등록금 기준으로 소급하여 미 납된 연구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. 다만, 수료 후 첫 학기 1 차 연구등록 후 해당 학기에 졸업을 한 자에 한해 연구등록금을 1 회만 납부할 수 있다.
- 2) **선택등록자:** 석사학위과정 또는 2008 년 이전 입학한 박사과정 수료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.

▶ 신청절차

- 1) 2025 학년도 2 학기 **1차 연구등록 의무 대상자**(2025 학년도 2 학기가 수료 후 첫 번째 학기인 자)는 **대학원교육지원팀**에서 일괄적으로 연구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므로, 연구등록 신청 절차 없이 등록금 기간 내 등록금고지서(연구등록금)를 출력하여 납부하면 됨.

2) 2차 연구등록 대상자 및 선택 연구등록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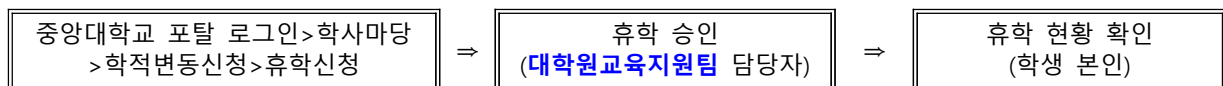


* 연구등록금: 해당 학기 계열별 수업료의 10%

■ 휴학(일반, 연장) 신청 안내

▶ 신청기간: **2025. 7. 22.(화) 10:00 ~ 9. 26.(금) 23:59**

▶ 신청절차



* **군입대휴학**: 입영통지서 사본 1 부(군복무 중인 경우는 군복무확인서)를 스캔하여 포탈에 휴학 신청 시 업로드 필수(입영일 및 입영부대 기재된 서류)

* **육아휴학**: 관련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임신확인서 등) 스캔하여 포탈에 휴학 신청 시 업로드 필수

* 상기의 휴학신청 기간을 지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신청을 하는 경우, 기말고사 시작 1 주일 전까지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**대학원교육지원팀**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.

1) 질병 :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 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

2) 기타 :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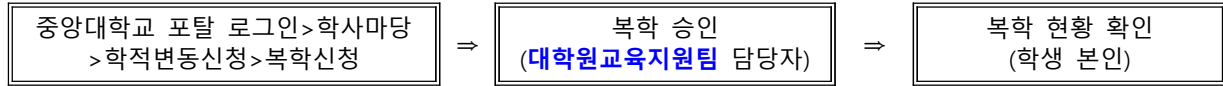
▶ 휴학 신청 유의사항

- 1)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으며, 최소 1 회 휴학기간은 1 년 단위로 신청. 1 년 이상 휴학 시 1 년 단위로 추가 휴학 신청해야 함. 일반 휴학은 최대 3 년(6 학기)까지 가능, 특별휴학(창업, 육아)은 추가로 최대 2 년(4 학기)까지 가능.
- 2) 신청한 휴학의 정해진 연한이 모두 지났을 때, 다음 학기 복학신청기간 내 복학 신청 혹은 다른 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됨.
- 3)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취소신청 및 장학금 반환 후에 휴학 신청 가능. 단,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을 수혜 받은 첫 학기에는 휴학 불가함.
- 4)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(학사 운영 규정 I 제 11 조)에 따라 등록금이 반환되며, 반환 처리를 위해 중앙대 포탈에 본인 계좌를 등록해야 함('포탈-내정보수정-계좌정보'에서 입력). 단,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, 반환금은 자동 상환 처리됨.

■ 복학(일반) 신청 안내

▶ 신청기간: 2025. 7. 22.(화) 10:00 ~ 8. 18.(월) 23:59

▶ 신청절차



* 군제대복학도 포탈에서 관련 서류(전역증명서 또는 병적 기재된 주민등록초본) 업로드하면 신청 가능함.

또한, 학기 개시 후 4 주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(부대장확인서 및 추천서 등)를 첨부하여 군제대복학을 신청할 수 있음. 단, 복학원서는 복학신청 기간에 제출해야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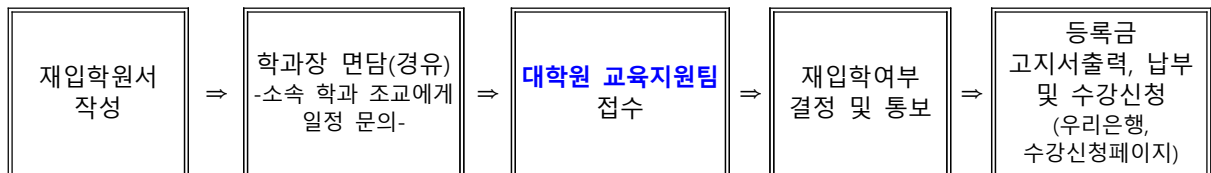
* 육아복학도 포탈에서 신청 가능함.

* 외국인복학도 포탈에서 신청 가능하고, 비자 관련 사항은 국제처 국제교류팀 (이메일 gsadmin@cau.ac.kr / 전화 02-820-6272, 6211 / 사무실 310 관 210 호)으로 문의.

■ 재입학 신청 안내

▶ 신청기간: 2025. 8. 1.(금) 9:00 ~ 8. 8.(금) 16:00

▶ 신청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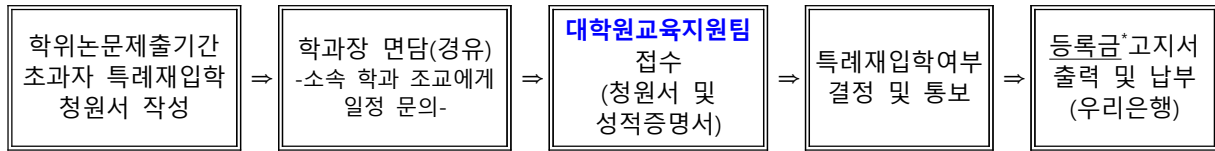
▶ 신청요건

- 일반재입학은 제적일 및 자퇴일로부터 1 년이 경과되어야 함. 다만,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(미복학제적자)나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(미등록제적자)는 1 학기 이후 재입학 신청이 가능함.
- 징계 및 재학연한 초과로 인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음.
- 재입학 요건은 갖추었으나 여석이 없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.

■ 재학연한초과자(학위논문제출기간초과자) 특례재입학 청원 안내

▶ 신청기간: 2025. 8. 1.(금) 9:00 ~ 8. 8.(금) 16:00

▶ 신청절차



* 등록금: 입학금 + 연구등록금(계열별 수업료의 10%)

▶ 신청요건

- 특례재입학은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I 제 40 조에서 정한 재학연한*(학위논문제출기간) 초과로 인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**연구수료자를 대상으로 함.**

* 재학연한: 석사학위과정 5 년, 박사학위과정 8 년, 석·박사학위 통합과정 9 년

다만, 휴학기간 및 제적기간은 재학연한에 삽입하지 아니하며 외국인은 재학연한을 두지 않음.

- 학칙 및 학사내규 등의 위반으로 징계중인 자는 특례대상에서 제외됨.
(단, 어학시험 또는 전공시험 불합격자는 학위논문제출시까지 반드시 합격하여야 함)
- 특례재입학 청원은 1 회에 한함.
- 특례재입학이 허가된 자의 재학연한 및 학위논문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음.

1. 석사학위과정은 특례신청일 기준 2 년 이내

2. 박사학위과정은 특례신청일 기준 3 년 이내

- **특례재입학 첫 학기에는 입학금과 연구등록금(계열별 수업료의 10%)을 납부해야 하고, 학위 취득 시까지 매 학기 연구등록을 신청하고 연구등록금을 납부해야 함.**
(상기 연구등록 신청 안내 참조)
- **특례재입학자는 휴학할 수 없음.**
- **특례재입학 신청 후 해당 학기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특례허가를 취소함.**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위논문제출기간(재학연한)초과자에 대한 특례조치 지침 참고
(대학원 홈페이지>대학원소개>규정>(특례재입학)학위논문제출기간(재학연한)초과자에 대한 특례조치 지침 클릭)

2025. 06.

중앙대학교 대학원장